

<p>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p> <p>4.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p> <p>②제1항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p> <p>제8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5항”을 “영 제59조제5항”으로 하고, 제3항 중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를 “당선자로 하고,”로 한다.</p> <p>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9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교규정의 제·개정 2.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5.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심의 요청한 사항 <p>②법 제32조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p> <p>③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제3항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p> <p>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p> <p>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④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없는 학교장의 경우에는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8조의 2를 삭제한다.</p> <p>안 【별표1】 중 학원시설 규모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보통교과계열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교과목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생활편익시설내의 보습학원의 강의실 규모는 480㎡를 초과할 수 없다”</p> <p>안 【별표2】 중 3.자동차운전 가.기능교습장부지(2)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종 대형반 병행시는 3,000㎡이상, 레이커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2,332㎡ 이상, 트레일러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617㎡이상,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반 병행시는 1,000㎡ 이상 부지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p> <p>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를 삭제한다.</p> <p>제5조제2항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부제내 각 단위 교습 시간 사이에는 적절한 휴식시간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p> <p>제7조의 제목 “(과외교습소의 부제운영)”을 “교습소의 부제운영”으로 한다.</p> <p>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로 본다.</p> <p>②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진행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	--

【별표1】

학원의 시설규모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비 고
기 술			90㎡ 이상	
문 리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검정고시	480㎡ 이상	
		보 습	70㎡ 이상	
		기 타	70㎡ 이상	
	인문·사회	어 학	330㎡ 이상	
		성인고시	150㎡ 이상	
기 타		70㎡ 이상		
경영실무	서비스·사무		90㎡ 이상	
예 능	예 능		90㎡ 이상	
독 서 실		독 서 실	120㎡ 이상	

비고 : 보통 교과계열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생활련의시설내의 보습학원의 강의실 규모는 480㎡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 고
1.기계공작, 기계정비, 기계설비, 기계제도	가. 시설 (1) 설 계 실 : 90㎡이상 (2) 실습공장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 2대 이상 (2) 모우터(7마력 이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중기운전	가. 시설 (1) 운전실습장 350㎡이상 (2) 기계실 3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제품 2종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배터리, 충전기, 전기배관판, 삼각대, 그리스 주유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자동차운전	가. 기능교습장 부지 (1) 6,600㎡ 이상으로 하되, 2층으로 고가교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는 기능교습장 부지면적이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기능교습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때에는 상하연결차로의 너비를 7미터(상하차로 분리시는 3.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 고
3.자동차운전	<p>(2)1종대형반 병행시는 3,000㎡이상, 레이커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2,332㎡이상, 트레일러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617㎡이상,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반 병행시는 1,000㎡이상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p> <p>(3)위 시설은 동일부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p> <p>나. 정비장 및 주차시설</p> <p>(1)정 비 장 : 60㎡ 이상으로 정비를 위한 제반기구 설치</p> <p>(2)주차시설 : 75㎡이상으로 포장</p> <p>다. 시설·설비 및 장비</p> <p>(1)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 별표15에서 규정한 연결식으로 설치하되 기능시험을 위한 채점기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기능교습장 부지면적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지의 형태상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 별표15에서 규정한 기능교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부지 형태에 따라 코스의 연장거리(700미터), 차로수(교차로포함), 기어변속 코스거리(70미터)가 미달하더라도 안전한 기능교습 환경이 확보되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교습 코스를 연결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2)코스시설은 안전설비를 하여야 하며, 교습중 다른 코스를 침범하지 않도록 배열하고 코스와 코스사이는 상당한 거리를 두어서 상호 교습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코스의 난이도에 따라 개별 코스를 설치 할 수 있다.</p> <p>(3)전·후진 코스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그 폭은 3.5미터, 길이는 1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4)생산공장에서 출고된 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작증명서가 구비된 차량을 기능교습장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에 1대 기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예비차량을 확보할 수 있다.)</p> <p>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자동차정비, 중기	<p>가. 시설</p> <p>(1) 강의실 : 30㎡이상</p> <p>(2) 정비실습실 : 90㎡이상</p> <p>(3) 기재실 : 30㎡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자동차 3대 이상</p> <p>(2) 가솔린기관 3대 이상</p> <p>(3) 디젤기관 1대 이상</p> <p>(4) 변속기 2대 이상</p> <p>(5) 차동기 2대 이상</p> <p>(6)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p> <p>(7)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p>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 고
4.자동차정비, 중 기	(8) 휠바란스 1대 (9) 휠얼라이언트 1대 (10) 배터리테스터기 1대 (11) 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CO, HC겸용) (12)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 (13)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14) 타이어 탈착기 1대 (15) 에어콘 가스주입기 1대 (16) 중기의 경우 해당 중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냉난방 산업안 전 열관리	가. 시설 (1) 실습실 : 90㎡ 이상 (2) 강의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수질·대기·폐기물 실험장치 1조 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1대 이상 (3)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보일러(부속장치 포함) 2종이상 (5) 미싱 2대 이상 (6) 가스분석기 1대이상 (7) 소방 및 가스설비용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3종 이상 (8) 배관 및 용접용 작업대(880 × 550m/m, 2인용) 5대 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1대 이상 (10) 가스, 전기용접기 각 2대 이상 (11) 바이스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삭제>		
7.시계 수리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 1대 이상 (2) 조정기 3대 이상 (3) 뽀지류 1set 이상 (4) 스탠드 30개 이상 (5) 자동분해소계기 1대 이상 (6) 현미경(30배 이상) 2대 이상 (7) 전기 인두기 10대 이상 (8) 시계전용 전기회로 시험기 5대 이상 (9) 방수시험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귀금속 가공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 고
8.귀금속 가공	나. 설비 및 교구 (가) 산소용접기 2대 이상 (나) 마모기 1대 이상 (다) 광택기 1대 이상 (라) 모루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마) 압연기(전기로리) 1대 이상 (바)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전기재료, 전기 기기	가. 시설 (1) 실습실 : 90㎡ 이상 (2) 전기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직류기, 단상유도전동기, 3상유도전동기(1/4마력 이상) 각 5대 이상 (2) 수전, 송전, 배전실 (3) 오실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 각 10대 이상 (4) 실험·실습대(4~6인용) 5대 이상 (5) 전기공사 실습작업판(900×1800m/m)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전자기기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 기준 (가) 회로시험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5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수신기 10대 이상 (라) 녹음기 10대 이상 (마)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20조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전파전자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텔레비전, 스위프발전기 1대 이상 ③ 오실로스코프 5대 이상 ④ 고전압계 1대 이상 ⑤ TV 10대 이상 (나) 전자기기과정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프린터 2대 이상 ③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④ 컴퓨터(PC)기기 10대 이상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 고
10.전자기기	(라) 비디오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③ VTR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통 신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정보통신 운용과정 (가) 화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이상) 1대 이상 (나) 하드디스크 1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 터미널용 컴퓨터 2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2대 이상 (마)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바)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2개 이상 (2) 정보통신 설비과정 (가) 모뎀(Modem) 10대 이상 (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마) 주파수발전기 1대 이상 (바)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컴퓨터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16bit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30대이상(일시 수용능력인 원 1인당 1대 이상) (2)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20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3.정보처리	가. 시설 (1) 강의실 : 60㎡ 이상 (2) 실습실 : 15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300MB이상의 자기디스크 1대 이상, 150MB이상의 자 기테이프 또는 카트리지 1대 이상, 600LPM(1,280CPS) 이상의 라인프린터를 갖추고 30대 이상의 터미널설치 가 가능한 중형 전자계산기 1대 이상 (2) "(1)"의 전자계산기에 연결된 단말용 컴퓨터 20대 이상 (3) 하드디스크를 갖춘 퍼스널컴퓨터 20대 이상 (4) 교육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토목, 건축	가. 시설 설계실 : 90㎡ 이상	

교 습 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14.토목, 건축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동 물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 300㎡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 : 어류,조류,갑각류 각5점 이상 (나) 박제제작셋트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set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처리장 : 15㎡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 탱크전 1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조 리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대 일시수용능력인원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1,000ℓ 이상) 1대 이상 (3) 오븐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5) 제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제과, 제빵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빵슬라이서 1대 이상 (2)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3)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4) 실습대 8대 이상 (5)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6) 추저울(5Kg 이상) 10대 이상 (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8) 반죽로라(DOUGH SHEETER) 1대 (9)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10)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조 주	가.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 고
18.조 주	나. 설비 및 교구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 : 학과 식별용 200종이상 (4) 양주병 :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수예, 자수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자수재봉기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방송제작, 조명, 음향, 촬영	가. 공통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②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③ 동기신호발생기(SYNGENERATOR) 1대 ④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⑤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⑥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⑦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 ⑧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⑨ 편집기(EDITOR) 1:1 또는 2:2 1대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베타캠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S.VHS CAMERA) 2대 이상 ② 조명기기(LIGHT, 1KW 이상) 5대 이상 ③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편집실 ① 기재실 30㎡ 이상 ② 설비 및 교구 ㉠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 방송용 녹화기(S.VHS 또는 BETACAM) 1:1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 고
20.방송제작, 조 명, 음향, 촬영	<p>2대 이상</p> <p>㉔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p> <p>㉕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p> <p>㉖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p> <p>(나) 녹음실</p> <p>① 기재실</p> <p>㉗ 녹음조정실 30㎡ 이상</p> <p>㉘ 녹음 스튜디오 30㎡ 이상</p> <p>② 설비 및 교구</p> <p>㉙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p> <p>㉚ 방송용 녹음기(REEL DECK)1대 이상</p> <p>㉛ 방송용 녹화기(VTR)1대 이상</p> <p>㉜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1대 이상</p> <p>㉝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p> <p>㉞ 필름편집기(FILM EDITOR)1대</p> <p>㉟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p> <p>㊱ 영상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p> <p>㊲ MULTI TRACK RECORDER 1대</p> <p>㊳ CASSETTE DECK 1대</p> <p>㊴ COMPACT DISK 1대</p> <p>㊵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p> <p>(다) 야외녹화장비</p> <p>①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p> <p>②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5대 이상</p> <p>③ 방송용 건전기 조명기(SUNGUN) 1대 이상</p> <p>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p> <p>(1) 종합과정</p> <p>(가) "가"목의 공통 시설</p> <p>(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2) 방송제작과정</p> <p>(가) "가"목의 공통 시설</p> <p>(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3) 방송기술과정</p> <p>(가) "가"목의 공통 시설</p> <p>(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교 습 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20. 방송 제작, 조 명, 음향, 촬영	<p>(4) 아나운싱 · 리포터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중 (3)의 (가)를 제외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p> <p>(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 · 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90㎡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p> <p>(6) 편집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 (1) 및 (3)의 (가)의 시설 ·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p> <p>(7) 촬영 · 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 (1) · (2) 및 (3)의 (다)의 시설 ·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p> <p>(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 (1) · (2) 및 (3)의 (다)의 시설 ·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p> <p>(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 (1) · (2) 및 (3)의 (나)의 시설 ·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p> <p>(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 시설 (나) "나"목 (3)의 (나)의 시설 ·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p> <p>(11) 유선방송 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① "가"목의 공통 시설 ② 기재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 ②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3대 이상 ③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④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⑤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⑥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⑦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⑧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⑨ 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p>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 고
20.방송제작, 조명, 음향, 촬영	⑩ 채널혼합기 1대 ⑪ 채널변환기(8CH이상) 1대 ⑫ 가입자수신기(CONVERTER)3대 이상 ⑬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⑭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산업디자인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나)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컴프레서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쇼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패션디자인	가. 시설 (1) 실습실 : 90㎡ 이상 (2) 강의실 :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로쉬 1set 이상 (4) 모타미싱 10대 이상 (5) 패턴 실습대 일시수용능력인원 4인당 1대 (6) 인대(마네킹) 5대 이상 (7) 컴퓨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피아노조율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 고
23.피아노조율	2대 이상 (4) 피아노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4.<삭제>		
25.간호조무사	가. 시설 (1) 강의실 : 60㎡ (2) 실습실 : 45㎡ 나. 설비 및 교구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패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8) 침대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이 용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바리깡, 면도,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거울 : 이발 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미 용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두(마네킹) 60개 이상 (2) 건발기(드라이) 10조 이상 (3) 콤팩트 60종 (4) 맛사지 침대 3대 (5) 미안대(거울) 20조 이상 (6) 샴프대 2대 (7) 세면장 및 급수시설 (8) 실습대(4인용) 1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삭제>		
29.관 광	가. 시설 (1) 실습실 :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 고
29.관 광	(2) 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 (3) 실습실당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이상 (4) 실습실당 시청각기구 및 카메라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주 산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1.워드프로세서, 타자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동일 종류·기능의 실습기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2.전통무용, 무용	가. 시설 (1) 무용실 : 90㎡이상 (2) 탈의실 : 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3.서 예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틀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2) 지필묵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이상 (3) 서법도서 10권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4.도예, 공예	가. 시설 실습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공작대 일시수용능력인원 4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5.음 악	가. 시설 음악실 : 9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 기준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이상)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악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주요실습용 악기 10대 이상 (나) 성악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 고
35.음 악	②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③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미 술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 기준 화관 및 화관걸이(이젤)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2) 과정별 기준 (가) 서양화 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석고 및 석고대 각 10점 이상 (나) 동양화 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벼루, 모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사 진	가. 시설 (1) 실습실 : 90㎡ 이상 (2) 암실 :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모델, 영화, 연극	가. 시설 (1) 실습실 : 90㎡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영화기술과정 (가) 현상실 10㎡ 이상 (나) 녹음실 15㎡ 이상 (다)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2)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9.바 둑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2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2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0.꽃꽂이, 꽃기예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레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20set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 고
40.독서실	가. 시설 열람실 12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열람대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이상, 세로 58cm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3】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교 습 과 정	일시수용 능력인원	비 고
1.기계공작, 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제도	40	실습실 60㎡ 기준
2.중기운전	10	실습실 350㎡ 기준(운전실습장면적의 증가에 따라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3.자동차운전	기능교습장 면적 및 기능코스(특수반) 규모에 따라 산정	가. 제1종보통반 및 제2종보통반은 기능교습장 부지면적 300㎡당 1인 이내, 제1종대형반은 990㎡당 1인이내 나. 레이커반은 기능교육코스 1조당 2인 이내, 트레일러반은 기능교육코스 1개당 1인 이내 다. 제2종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반은 기능교습장 부지면적 50㎡당 1인
4.자동차정비, 중기	30	실습실 45㎡ 기준
5.냉난방 산업안전, 열관리	40	실습실 45㎡ 기준
6.<삭제>		
7.시계수리	30	실습실 45㎡ 기준
8.귀금속가공	30	실습실 45㎡ 기준
9.전기재료, 전기기기	30	실습실 45㎡ 기준
10.전자기기	40	실습실 45㎡ 기준
11.통신	30	실습실 45㎡ 기준
12.컴퓨터	30	실습실 45㎡ 기준

교 습 과 정	일시수용 능력인원	비 고
13.정보처리	30	실습실 45㎡ 기준
14.토목, 건축	20	실습실 45㎡ 기준
15.동 물	20	실습실 45㎡ 기준(사육장 면적의 증가에 따라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16.조 리	30	실습실 45㎡ 기준
17.제과, 제빵	30	실습실 45㎡ 기준
18.조 주	40	실습실 60㎡ 기준
19.수예, 자수	30	실습실 45㎡ 기준
20.방송제작, 조명, 음향, 촬영	20	실습실 45㎡ 기준
21.산업디자인	30	실습실 45㎡ 기준
22.패션디자인	40	실습실 45㎡ 기준
23.피아노조율	30	실습실 45㎡ 기준
24.<삭제>		
25.간호조무사	30	실습실 45㎡ 기준
26.이 용	30	실습실 45㎡ 기준
27.미 용	20	실습실 45㎡ 기준
28<삭제>		
29.관 광	30	실습실 45㎡ 기준
30.주 산	54	실습실 45㎡ 기준
31.워드프로세서, 타자	40	실습실 45㎡ 기준
32.전통무용, 무용	20	무용실 45㎡ 기준(무용실 면적의 증가에 따라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33.서 예	30	실습실 45㎡ 기준

교 습 과 정	일시수용 능력인원	비 고
34.도예, 공예	30	실습실 45㎡ 기준
35.음악(피아노)	20(15)	실습실 45㎡ 기준
36.미 술	30	실습실 45㎡ 기준
37.사 진	30	실습실 45㎡ 기준
38.모델, 영화, 연극	20	실습실 45㎡ 기준
39.바 둑	20	실습실 45㎡ 기준
40.꽃꽂이, 꽃기에	30	실습실 45㎡ 기준
41.화공계열	40	실습실 45㎡ 기준
42.산업안전계열	40	실습실 45㎡ 기준
비고 : 상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에 대하여는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한다.		

<p>.....</p> <p>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 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p> <p>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 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5호중 “분양 및 임대수입”을 “대부 및 운영수입금”으로 한다. 안 제6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중 “주경 기장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세입) 기간시설확충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국고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타 수입</p> <p>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 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주경기장(이하 “주경기장”이라 한다) 건설 및 관련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 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p> <p>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주경기장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 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3조(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건설사업계정· 기간시설확충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영한다.</p> <p>제4조(관리·운영) ①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운영하며, 그 사무는 계정별로 각각 그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 국장 또는 단장 이 처리한다. ②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회 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 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건설사업계정</p> <p>제5조(세입) 건설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p>
--	---